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식의약 지식정보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규로 추가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4.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을 “의료기기·위생용품 및 담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84”를 “6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83”을 “6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4”를 “66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12”를 “1,517”로 하고, 일반직 계 “1,512”를 “1,5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99”를 “1,504”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 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마약류 · 화장품 · 의약외품 · <u>의료기기 및 위생용품</u> 등(이하 “식품 ·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 ----- <u>의료기기 · 위생용품 및 담배</u> - ----- -----.
제6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 여 처장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5. <u>온라인대변인 지정 · 운영 등</u> <u>소셜 미디어 정책홍보 총괄 ·</u> <u>점검 및 평가</u>	제6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24. (생 략) <u><신 설></u>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4. (현행과 같음) <u>25.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 수</u> <u>립 및 제도 운영(식품의약품</u> <u>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u> <u>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u>
<u><신 설></u>	

	<u>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84</u>	<u>686</u>	+2
·	·	·	
·	·	·	
일반직 계	<u>683</u>	<u>685</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64</u>	<u>666</u>	+2
·	·	·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12</u>	<u>1,517</u>	+5
일반직 계	<u>1,512</u>	<u>1,517</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99</u>	<u>1,504</u>	+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3